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總 務 社 會 委 員 會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1995年 3月  
總務社會委員會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5年 3月 6日
- 나. 提 出 者 :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 다. 回附日字 : 1995年 3月 7日
- 라. 上程日字 : 1994年 3月 14日
- 마. 開催回數 및 日數 : 1回 (95年 3月 14日)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監查室長 鄭佑采)

가. 提案 事由

- 정부의 '94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의하여 서구 분구관련법률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의 공포('94. 12. 22)에 근거하여 '95. 3. 1 서구의 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칭하게됨.
-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시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가 조정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함

나. 主要 骨子

-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변경하기 위함.

(제3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趙 澤 龍)

- 1995년 3월 1일 서구일부가 남구로 분리 개칭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시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가 종전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게된 조례안으로써 내용으로는 6급 전문위원 1명과 사무과 직원 1명이 감원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략

5. 討論 要旨 : 생략

6. 審査 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 意見 要旨 : 생략

8. 其他 事項 : 없음